

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정 2019년 3월 11일 조례 제170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·의결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오산시 공무원
2. 오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
3.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.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

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3.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6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·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오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오산시 기부심사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,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